

## 안산시가스사업자및가스사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의 안 번 호	796
------------	-----

제출년월일 : '99. . . .  
제 출 자 : 안 산 시 장

### □ 폐지이유

- 가스사업자 및 가스사용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에 관하여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액화석유가스의안전 및 사업관리법시행령·도시가스사업법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중복규정으로서 불필요한 안산시가스사업자및가스사용자에 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임

### □ 주요골자

"동조례 폐지""

### □ 폐지 조례(안) — 별첨

### □ 기타 참고사항

- 기준조례 : 별 첨

## **안산시가스사업자및가스사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안산시가스사업자및가스사용자에 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 **부 칙**

이 조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편 경제통상 제1장 유통경제 안산시가스사업자 및 가스사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 안산시가스사업자 및 가스사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 안산시조례 제398호 ]  
1991. 3. 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43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제48조와 도시가스사업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이하 "과태료"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처분의 균형과 공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과대상자)** 과태료의 부과대상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43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적용을 받은 자
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제48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적용을 받는 자
3. 도시가스사업법 제54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적용을 받는 자

**제3조(처분)** ①처분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할 수 있다.

1. 처분청 또는 감사기관의 시정요구를 받고도 그 시정을 태만히 하였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반 행위를 한자에 대하여는 별표와 기준보다 가중 부과할 수 있다.
  2.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별표의 기준보다 경감하여 부과할 수 있다.
- ②위반행위가 2개 이상인 때에는 그중 무거운 부과기준을 하한선으로 하고 합산한 부과기준을 상한선으로 하여 그 범위내에서 부과한다.
- ③처분청이 처분을 행하였을 때에는 위반사항과 처분내용을 피처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청문)** 처분청이 제3조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피처분자에게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 제3회 경제통상 제1장 유통경제 안산시가스사업자 및 가스사용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

제5조(과태료의 처분통지 등) ①처분청이 과태료를 부과, 징수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 후 피처분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통지서'를 송부함으로써 행한다. 이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자는 처분통지서 발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과태료를 처분청이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지정한 독촉장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 납부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수납기관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납부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과태료는 이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

제6조(의신청 및 법원에의 통보) ①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처분통지서 발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처분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준용)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일 전에 부과한 과태료는 이 조례에 의하여 부과된 것으로 본다.

## 제3편 경제통상 제1장 유통경제 안산시가스사업자 및 가스사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 과태료 부과 기준 및 금액

위반 내용	관련 법 규	처분 내용		
		1회	2회	3회
1. 안전관리 규정				
가. 사업개시 또는 사용신고시 안전 관리 규정을 제출 하지 않았을 때	고법 제11조 제1항 액법 제10조 제1항 도법 제26조 제1항	30만원	60만원	100만원
나. 안전관리 규정의 변경 명령을 위반 할 때	고법 제11조 제2항 액법 제10조 제2항	30만원	60만원	100만원
다. 가스사업자 및 그 종사자가 안전 관리 규정을 준수 치 않고, 안전관리규정을 실시 기록을 작성 보존하지 않았을 때	고법 제11조 제4항 액법 제10조 제4항	10만원	30만원	50만원
라. 제조공정 및 자체검사 방법 등을 안전 관리 규정에 포함시키지 않았을 때	고법 제11조 제3항 액법 제10조 제3항	30만원	60만원	100만원
2. 안전관리자				
가. 안전관리자가 여행, 질병,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데도 대리자를 선임하지 않았을 때	고법 제15조 제3항 액법 제14조 제3항 도법 제29조 제3항	30만원	60만원	100만원

## 제3편 경제통상 제1장 유통경제 안산시가스사업자 및 가스사용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장수조례

위반 내용	관련 법 규	저본내용		
		1회	2회	3회
3. 보험가입 가. 가스업자가 공급하는 가스의 사고로 인한 타인의 생명, 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때	고법 제25조 제1항 액법 제33조 제1항	60일미만 30만원	60일이상 180일미만 60만원	180일이상 100만원
4. 자체검사 가. 가스시설 및 용기등에 대한 안전관리규정의 실시기록 또는 자체검사 기록을 작성 보존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할 때	고법 제12조 액법 제11조 제1,2항	10만원	30만원	50만원
5. 시공의 자체검사 가. 시공자가 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로 시공관리한 때에는 동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거 자체검사를 실시하고 그 기록을 작성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 한 때	액법 제16조 제1항 도법 제13조 제1항	10만원	30만원	50만원

## 제3편 경제통상 제1장 유통경제 안산시가스사업자 및 가스사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위반내용	관련법규	처분내용		
		1회	2회	3회
6. 공급자의 의무 가. 가스수요자가 시설을 개선하지 않았는데도 가스를 계속하여 공급하고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을 때	고법 제10조 제3항 액법 제9조 제3항	10만원	30만원	50만원
나. 가스수요자가 그 사실에 대한 개선 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아니한 때	고법 제10조 제4항 액법 제9조 제4항	3만원	6만원	10만원
7. 시설용기의 안전유지 가. 가스용기를 동자부령에 의거 안전하게 유지관리하지 아니한 때	고법 제13조 제4항 액법 제12조 제4항	10만원 30만원	30만원 60만원	50만원 100만원
나. 충전대장 또는 판매 대장을 작성하여 동자부령에 정하는 사항을 기록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협회로 기록할 때	고법 제13조 제3항 액법 제12조 제3항	10만원	30만원	50만원
8. 사용신고 등 가. 가스사용자가 동자부령이 정하는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때	고법 제20조 제3항 액법 제29조 제3항	10만원	30만원	50만원

## 제3면 경제통상 제1장 유통경제 안산시가스사업자 및 가스사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위반내용	관련법규	처분내용		
		1회	2회	3회
나. 가스사용신고 대상자는 사용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완공한 때에는 사용전에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나 이를 받지 아니하거나 또는 정기적으로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때	고법 제20조 제4항 액법 제29조 제4항	10만원	30만원	50만원
9. 허가관청 등의 조치 가. 위해 예방 명령에 위반한 때	고법 제24조 액법 제32조	10만원	30만원	50만원
10. 보고, 검사 등 가. 보고 또는 서류 제출 명령 등에 위반한 때	고법 제26조 제1항 액법 제35조 제1항	10만원	30만원	50만원
나. 도시가스 사업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였으나 이를 이행치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때	도법 제41조 제2항	10만원	30만원	50만원
11. 가스시설의 시공관리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사에 관한 시공 관리를 하고자 하는 자가 등록을 하지 아니할 때	액법 제15조 제4항 도법 제12조 제4항	(기타)50만원 (고의)100만원 (기타)50만원 (고의)100만원		

## 제3면 경제통상 제1장 유통경제 안산시가스사업자 및 가스사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위 반 내 용	관 련 법 규	처 분 내 용		
		1회	2회	3회
나. 가스시설의 설치 공사 또는 변경공 사를 할 때에는 그 시설을 시공관 리할 수 있는 자 격을 가진자(시공 자)로 하여금 공 사를 시공관리 하 지 않았을 때	액법 제15조 제1항 도법 제12조 제1항	10만원 30만원	30만원 60만원	50만원 100만원
12. 가스공급 의무				
가. 가스사업자는 정 당한 사유없이 허 가받은 공급지역 안에 있는 수요자 에게 가스의 공급 을 거절하거나 허 가받은 공급지역 외의 지역에 액화 석유 가스를 공급 한 경우	액법 제25조	30만원	60만원	100만원
13. 공급시설의 임시 합격				
가. 임시합격의 규정 에 의하여 임시 합격으로 된 시설 은 정하여진 기간 에 한하여 그 사 용방법에 따라 사 용하여야 하나 이 를 위반할 때	액법 제19조 제2항 도법 제16조 제2항	10만원	30만원	50만원

## 제3면 경제통상 제1장 유통경제 안산시가스사업자및가스사용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 조례

위 반 내 용	관 련 법 규	처 분 내 용		
		1회	2회	3회
14. 판매의 제한				
가. 동력자원부장관 이 정하는 가스공 급 방법에 어긋날 때	액법 제24조 제3항	10만원	30만원	50만원
나. 도지사 또는 시 장, 군수가 정하 는 지역 또는 건 물안에서 용기에 의한 가스를 공급 할 때	액법 제24조 제4항	10만원	30만원	50만원
15. 시공기록등의 보존				
가. 시공자는 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 경공사를 완공한 때에는 동자부령 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공기록 및 배관도면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 록 보존하여야 하 나 이를 위반하였 을 경우	액법 제17조 도법 제14조	10만원	30만원	50만원

## 제3편 경제통상 제1장 유통경제 안산시가스사업자 및 가스사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위 반 내 용	관 련 법 규	처 분 내 용		
		1회	2회	3회
16. 공급 규정의 게시 의무 가. 액화석유가스 집 단공급사업자, 도 시가스사업자가 공급규정의 승인 을 얻거나 변경한 때 영업소, 사무 소의 보기 쉬운곳에 공급 규정을 게시하여야 하나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액법 제28조 도법 제22조	10만원	30만원	50만원
17. 가스사용시설의 위 해 예방 조치등 가. 가스사용시설의 설치 기준 및 기술기준의 정기안전점검 실시결과 부적합시설에 대한 개선권고를 따르지 아니한 때 나. 가스수요자가 그 시설에 대한 개선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도법 제28조 제2항  도법 제28조 제3항	10만원  3만원	30만원  6만원	50만원  10만원

- \* 약 어 : - 고 법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 액 법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 도 법 : 도시가스사업법

제3편 경제통상 제1장 유통경제 안산시가스사업자 및 가스사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별지 제1호서식〉

제 호

수 신

제 목 : 과태료 처분통지

1. 귀하께서는 다음과 같이 ( )법 제 조  
항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습니다.

가. 위반일시 :

나. 위반내용 :

2. 위의 위반 사실에 대하여( )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니 년 월 일까  
지 시 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3.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위의 납부기한내에 이  
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할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첨 부 : 1. 과태료 납부통지서 1부.

2.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신청서 1부.

안 산 시 장

⑧

〈별지 제2호서식〉

시 분임세입징수관이 발행한 이 납  
입고지서는 시 금고로 필히 보내주시  
기 바랍니다.

납 입 고 지 서

제 호	19 년 도 일 반 회 계	과주관
(관)	(항)	
(목)	W	
일금		
단		
상기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	19 년 월 일	
납부장소	시 금고	
19 년 월 일		
기하		

제 호	19 년 도 일 반 회 계	과주관	
(관)	(항)		
(목)	W		
일금			
단			
상기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19 년 월 일	시 금고	귀하	
납입자			
징수관	①	취급자	②
수입금	③	기 장	④
출납원			

영 수 증

제 호	19 년 도 일 반 회 계	과주관
(관)	(항)	
(목)	W	
일금		
단		
상기 금액을 영수합니다.		
19 년 월 일	금 고 ⑤	시
기하		

제3권 경제통상 제1장 유통경제 안전시가스사업자 및 가스 사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제3면 경제통상 제1장 유통경제 안산시가스사업자 및 가스사용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

〈별지 제3호서식〉

(엽서 후면)

제	호	과태료납부독촉장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허가번호 (신고번호)		상호
과태료납부통지서 번호			
위반사항			
과태료 금액			당납부기초일

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하겠습니다.

मृत्यु

# 안산시장 인

### 제3편 경제통상 제1장 유통경제 안산시가스사업자 및 가스사용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정수조례

### 〈별자 제4호서식〉

##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제3편 경제통상 제1장 유통경제 안산시가스사업자 및 가스사용기체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별지 제5호서식〉

제 호

수 신

제 목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1.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43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제48조 및 도시가스사업법 제54조의 각호와 관련입니다.
2. 가스사업법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처분을 한 바 본인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이의제기가 있으니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하여 과태료 재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처분 에 대한 이의 제 기 자	성 명	(한자)	주민등록 번호	
	주 소			
가 스 사 업	허가(신고) 번 호		상 호	
(사 용) 장	소 재 지		전화 번호	
과 태 료	과태료납부통지일		과태료금액	
처 분 내 역	부과관청		이의제기 일자	

- 첨 부 1. 과태료 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

제3편 경제통상 제1장 유통경제 안산시가스사업자 및 가스 사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정수준

과학 교수부